#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O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3일, 평창군수 제출

O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9일 회부

O 상정일자: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0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설관리과장)

####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O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규정을 명시(안 제4~7조, 제15조)
- O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권고 반영(안 제13조)
- O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이용료를 원칙적으로 미 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반영(안 제14조)

-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21조)
-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안 제23조 )
- O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 이외 개별 실내체 육관을 '기타 실내체육관'으로 단일화함(안 별표 1) 및 기타 용어 수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O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등의 사용을 <u>허가사항에서 신청</u>으로 변경 이용허가의 우선순위를 <u>각급학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직장 및</u> 동호인 보다 우선시 함

- 안 제6조 허가 취소 사항을 <u>군수의 지시사항 위반, 기타 불가항력적인</u> 사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건위반, 목적외 사용으로 변경
- 안 제13조 이용료 감면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추가
- 안 제14조에서는 <u>이용료를 원칙적 미 반환에서 반환을 원칙으로 변경</u> 안 제23조는 <u>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을 신설</u> 안 [별표 1] 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외의 <u>각 실내체육관을 "기타</u>
- 실내체육과"으로 명칭 및 요금을 단일화한 내용입니다.
- 기정내용을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볼 수 있어
   본 조례안은 잘 정비되었다 판단되며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1. 국가, 도 또는 군의 행사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 제6조 제목 "(이용허가 제한 등)"을 "(이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금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 중 "매분기별"을 "매 반기별"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2. 100분의 80 감면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 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를 위한 행사

#### 3. 100분의 50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 카.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 0% 배상
-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이용자의 설비)"를 "(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 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체육관련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 제23조의 제목 "(위·수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 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1. 이용료 기본액 (단위:원)

구분	체육시설		기본액	비고		
	종합	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용이용	종합	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체 육	국민처	육센터	100,000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관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 3시간 기준임.	
	테니스장			25,000		
	궁도장			12,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이 요	족구장			10,000		
8	야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일 부 이 용	., ,		개인	1,200		
	일반 체육시설		개인(월액)	20,000		
		, , _	단체(1인당)	800	·2시간 기준임	
၀] _ရှ	체력단련		개인	3,000		
0	실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개인(월액)	10,000		

## 2.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

|--|

종합운	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체 육	국민체육센터	150,000	· 3시간 기준임.
관	기타 실내체육관	110,000	
테니스	· 장	35,000	
궁도장		15,000	
	(천연잔디)	120,000	
	(인조잔디)	60,000	
족구장		15,000	
야구장		30,000	
풋살구	장	30,000	
골프연		15,000	
게이트	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	볼장(실외)	10,000	
파크골	프장	20,000	
실외 능	;구장	무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제4조(이용허가) ① 지역주민 누

부대시설 등을 이용(사용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 일 5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이용 허가신청을 하여야하 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2일전 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 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이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결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

구나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 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③
별지 제3호서식

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 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 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 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 다.

-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니 관하는 행사
- 2. 관내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서 주관하는 행사
- 3.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 련 등의 체육활동
-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신 설>

제6조(이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가한다.

- 1. 국가, 도 또는 군의 행사
-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 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는 이용허가를 취소·제한·정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 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 해함이 판명될 때 한 때

-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 설 이용이 불가할 때
-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 료를 체납하였을 때
- 4.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판단될 때

<신 설>

<신 설>

략)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 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 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금지 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③ (생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③ (현 행과 같음)

- — — -		
메	반기별	
.,		
		<b>.</b>
	매 	매 반기별 

⑤ (현행과 같음)

- 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부 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의 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 창군에 소재한 초 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 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 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 시설
  - 2.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 회 및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 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 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워도교 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 가 인정하는 자
  - 4.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 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기타 <u>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u> 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체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 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 다.

- 1. 전액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 사
-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 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 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 2. 100분의 80 감면

#### 인정하는 경우

- 6.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 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 는 경기·행사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다. 가 · 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행사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3. 100분의 50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 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 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카.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 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 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

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 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 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u>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u> 에 따른 대한체육회
- <u>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u>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

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 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 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 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 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2. 천재지변 또는 우<u>천으로 이</u> 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 부를 반환할 수 있다.
-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전 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 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 할 수 있다.

<신 설>

감면을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 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 다.

전액 반환

-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 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 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 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신 설>

〈신 설〉

및 배상한다.

-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및 이용료의 10% 배상
-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20% 배상
-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 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 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

제15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 제15조(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 비를 하고자 <u>할 때에는 미리군</u> 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 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u>수 있다.</u>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 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 체 및 지역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수탁| 을 취소할 수 있다.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 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 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 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 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체육관련단체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 탁 기본 조례 를 적용한다.

제23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동일)
<신 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
	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
	할 수 없다.

#### 행 안 혅 개 정 [별표1] [별표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1. 이용료 기본액 1. 이용료 기본액 구분 비고 구분 경기장 기본액 체육시설 기본액 비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3시간 기준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일 3시간 기준임. 120,00 120,00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00,00 국민체육센터 100,00 국민체육센터 <u>대화문화체육관</u> 9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계존체육관 80,000 테니스장 25,000 미탄체육관 8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70,000 12,000 테니스장 25,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12.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족구장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야구장 20,000 족구장 10.000 야구장 풋살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실외 농구장 무료 1,200 1,200 일반 체육시설 개인(월액) 20,000 일반 체육시설 개인(월액) 20,000 ·2시간 기준임 단체(1인당) 800 단체(1인당) 800 -2시간 기준임 개인 3,000 3.000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개인(월액) 10,000 샤워실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2. 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2. 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경기장 구분 기본액 비고 체육시설 기본액 비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18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50%를 기간만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국민체육센터 150,000 가산하다 국민체육센터 150.000 기건된다.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u>대화문화체육관</u> 130,000 110.000 " 육 관 관 기타 실내체육관 3시간 기준임. 110,000 테니스장 35,000 90,000 궁도장 15,000 테니스장 35,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15,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족구장 15,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야구장 30,000 풋살구장 30,000 야구장 3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게이트볼장(전천후) 파크골프장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실외 농구장 무료 파크골프장 20,000

무료

실외 농구장